

주택관리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2018.4

운용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주거복지지원처	김여정	055-922-5526
	나동현	055-922-5527

주택관리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1. 제안이유

-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임대주택 대상을 국민임대에서 전체 임대주택으로 확대하고, 기입주 임대주택단지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규정을 신설하여 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정책에 대응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17.8.16)에 따라 분양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사업주체의 어린이집 임차인선정 근거 및 기준 마련

2. 주요골자

- 가. 신규입주 임대주택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권을 양여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항 개정 (안 제23조제2항)
- 나. 기입주 임대주택단지 민간어린이집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협의 및 입주자 과반수 동의가 있을 경우 국공립 전환 가능토록 한 조항 신설(안 제23조제8항)
- 다. 분양주택 어린이집 임차인 선정 등은 입주예정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처리토록 조항 신설(안 제23조제9항)

주택관리규정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주택관리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제23조제2항 중 “2005년 10월 이후 신규 입주하는 국민임대주택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 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를 “신규 입주하는 임대주택 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권을 양여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3조 제7항을 삭제한다.

제23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기입주 임대주택단지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를 거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하고,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제2항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제23조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양주택은 어린이집 선정 등 관련사항에 대하여 공고 및 개별통지 후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고 어린이집 임차인 선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부 칙(2018. . .)

이 시행세칙은 2018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23조(어린이집)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본부장은 2005년 10월 이후 신규 입주하는 국민임대주택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⑥ (생략) ⑦ 국민임대주택과 분양전환하지 않는 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의 어린이집 운영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르고 국민임대주택과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의 어린이집의 운영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제23조(어린이집)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본부장은 신규 입주하는 임대주택 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권을 양여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⑥ (현행과 같음) ⑦ <삭제> ⑧ 기입주 임대주택단지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를 거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하고,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제2항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정부정책 반영 -제2항 개정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전환 규정 미비에 따른 신설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신설>	⑨ 분양주택은 어린이집 선정 등 관련사항에 대하여 공고 및 개별통지 후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고 어린이집 임차인 선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법령개정에 따른 기준마련